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**안 번 호** 제2022-013-095호 (사건번호 : 2020조총0036)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 결 연 월 일 2022. 8. 10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4,5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(법률 제14839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,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('22년 기준) >

| 사업자 등록번호 | 대표자 성명 | 주소 | 직원 수 |
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|
|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

※ 자료 출처 : 피심인 제출자료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<sup>1)</sup>는 2020. 2월 특별점검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# 1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- 1) 피심인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, 외부에서 00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,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 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다.
- 2) 피심인은 00정보시스템에서 URL주소를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 게도 선수 사진 열람이 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다.
- 3) 피심인은 00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<sup>1) 2020. 8. 5.</sup> 시행된 개정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)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(제2항),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·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(제3항)

- 4)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할 시 일부 항목이 누락된 접속기록만을 보관\*한 사실이 있다.
  - \* 체육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대량 조회 및 다운로드시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누락, 체전시스템에서 수행업무 중 다운로드, 인쇄 기록 누락

#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. 7. 8. ~ 2022. 7. 22. '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## 가. 관련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이 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,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<sup>(제2호)</sup>,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<sup>(제4호)</sup>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47호)」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(VPN: Virtual Private Network)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 (제6조제2항)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제6조제3항)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 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. (제6조제5항)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(제8조제1항)

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①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

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6조제2항), ②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6조제3항), ③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접속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 사실(고시 제6조제5항), ④ 접속기록 항목을 일부누락하여 보관·관리한 사실(고시 제8조제1항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를위반한 것이다.

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법 제75조제 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「과태료 부과기준」에 따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가. 기준금액 산정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원을 적용한다.

#### <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| 위 반 사 항   | 근거법령      | 위반 횟수별<br>과태료 금액(단위:만원) |       |       |
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|           | 1회                      | 2회    | 3회 이상 |
| 타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<br>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<br>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P! MI/5/2 | 600                     | 1,200 | 2,400 |

## 나. 과태료의 가중ㆍ감경

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기준금액의 25%인 150만원을 감경한다.

| < | 과태료 | 부과기 | 준(행정안전부 | 기준 | (19.10.7.))> |
|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
|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

| 유형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대상규모        | 중·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감경(50%)        |
| 내용.정도       | 경미사항 3/10 미만 위반 <sup>*</sup> | 감경(50%)        |
| 네ㅎ. 6포      | 중요사항 7/10 이상 위반*             | 가중(50%)        |
| 위반자유형       | 장애/심신미약자 등                   | 감경(50%)        |
|             | <del>부주</del> 의등 + 피해없음      | 감경(50%)        |
|             | 검사 전 시정/해소                   | 감경(50%)        |
| 태도.노력       | 의견제출 기간 시정/해소                | <u>감경(25%)</u> |
|             | 은폐·조작 위반                     | 가중(50%)        |
|             | 검사 거부/미시정                    | 가중(50%)        |
|             | 피해자 10만명 이상                  | 가중(50%)        |
| 결과          | 2차 피해 발생                     | 가중(50%)        |
|             | 3개월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| 가중(50%)        |
| 기타 피스 시     | 기타 필요 시                      | 감경             |
| 기타 필요 시<br> | 기타 필요 시                      | 가중             |

<sup>\*</sup> 과태료 5천만원(75조1항) 적용 조항은 중요사항, 1천만원(75조3항) 적용 조항은 경미사항으로 구분

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sup>※</sup>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

#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 대료) 제2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